

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8. 20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8.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99. 8.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 설치의무 폐지(안 제4조제2항)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주차장표지,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는 시장이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하고 기존의 행정규제인 민간인의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노상주차장설치제도 개선(안 제11조제4항)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토록 하여 주택가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안 제14조)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차고지 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용차량 소유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완화(안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건축주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5)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제도 보완(안 제23조 내지 제30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를 통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차요금의 조정 방안 신설(안 별표1의제1호자목)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시책의 일환인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에 있어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

7)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안 별표1의제1호차목)

주택가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워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주차요금을 적용하기 위함.

•주간 : 20,000원 •야간 : 15,000원 •주·야간 : 30,000원

8)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의 확대 및 감면율 조정(안 별표1의제3호)

- 장애인 및 상이자의 대리운전차량, 함께타기 실천차량, 노외주차장에 인접 주민의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항목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항목을 신설
- 요금감면 대상자의 감면요율은 타시의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을 고려하여 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은 20퍼센트 범위 내로 개정하고 장애인, 상이 자 및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50퍼센트 감면혜택 부여

9)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2)

동일 용도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노상주차장 설치의 경우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6미터 미만의 도로는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 통행과 특히 어린이들의 보행에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설치 가능지역은 파악하였는지?	○ 노상주차장 6미터 미만 도로의 설치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6미터 미만 전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 이후 전지역을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만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1대에 대하여 차고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대수를 규정한 이유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몇 톤 차량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p> <p>○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설치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풍치지구 해제 후 재개발 등 건축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현행법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p> <p>○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시기는?</p>	<p>○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업목적이 있는 화물자동차를 몇 대씩 주차할 경우 공익에 맞지 않아 1대로 규정한 것이며, 화물자동차의 5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p> <p>○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법상 설치 기준보다 강화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66%밖에 되지 않아 건축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이 다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p> <p>○ 2000년도에 시범실시 후 문제점 보완한 후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임.</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 설치 의무 폐지(안 제4조제2항)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주차장표지,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는 시장이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하고 기존의 행정규제인 민간인의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나. 노상주차장설치제도 개선(안 제11조제4항)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토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안 제14조)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차고지 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용차량 소유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완화(안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마.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제도 보완(안 제23조 내지 제30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용자를 통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바. 주차요금의 조정 방안 신설(안 별표1의제1호자목)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시책의 일환인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에 있어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

사.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안 별표1의제1호차목)

주택가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워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주차요금을 적용하기 위함.

• 주간 : 20,000원 • 야간 : 15,000원 • 주·야간 : 30,000원

아.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조정(안 별표1의제3호)

- 장애인 및 상이자의 대리운전차량, 함께타기 실천차량, 노외주차장에 인접 주민의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항목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항목을 신설
- 요금감면 대상자의 감면요율은 타시의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을 고려하여 부제 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은 20퍼센트 범위 내로 개정하고 장애인, 상이자와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50퍼센트 감면혜택 부여

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 2)

동일 용도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주차장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의 주차로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

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이용안내표지(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차장 표지(별지 제2호 서식)
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별지 제3호 서식)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 의 계 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 부료 상당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기타의 경우	경 쟁 계 약	입 찰 가 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장 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 외에 당해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④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단,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제3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

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을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의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

③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을 익월 5일까지 기타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부설 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제1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시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하역 외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제17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6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야간) 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보조 및 용자

제23조(보조 및 용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의 대상) 제23조에 의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7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보조금 교부방법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②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용자의 대상)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 용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8조(용자의 방법) ①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자금의 지급절차 및 용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급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음자금의 반환) 음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음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음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0조(강제징수)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음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된 보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주차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별표 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급 지	1 회 주 차		1 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마다		주 간	야 간
노 상	1 급 지	400	200			
	2 급 지	300	100			
	3 급 지	300	100	4,000	50,000	40,000
노 외	1 급 지	400	200	8,000	90,000	60,000
	2 급 지	300	100	6,000	60,000	40,000
	3 급 지	300	100	4,000	40,000	30,000

비 고

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공영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라.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 08:00~20:00

2) 야간 : 20:00 초과~익일 08:00 미만까지

마. 1일 주차제 및 월정기 주차제의 사용시간, 사용일 경과 후에는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바.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1.5배

2) 25인승 초과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사. 주차요금의 요율

1) 노상주차장 1·2급지의 경우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하여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당해 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한다.

2)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아. 환승주차장

1) 환승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환승주차장은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1회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1일 주차요금은 3,000원,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으로 하며, 이용자가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한다.

자. 주차요금의 조정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수요관리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차. 거주자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원주차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으로 하며, 주·야간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월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

나. 2급지 : 1급지·3급지 이외의 지역, 중로 15미터 이상 노상주차장

다.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노외주차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차장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나.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재 운행 및 함께타기 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한다.

라. 소형자동차(배기량 800cc 미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마.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이용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85㎡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 정원 70인당 1대
7.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3]

과징금 가감기준

(제31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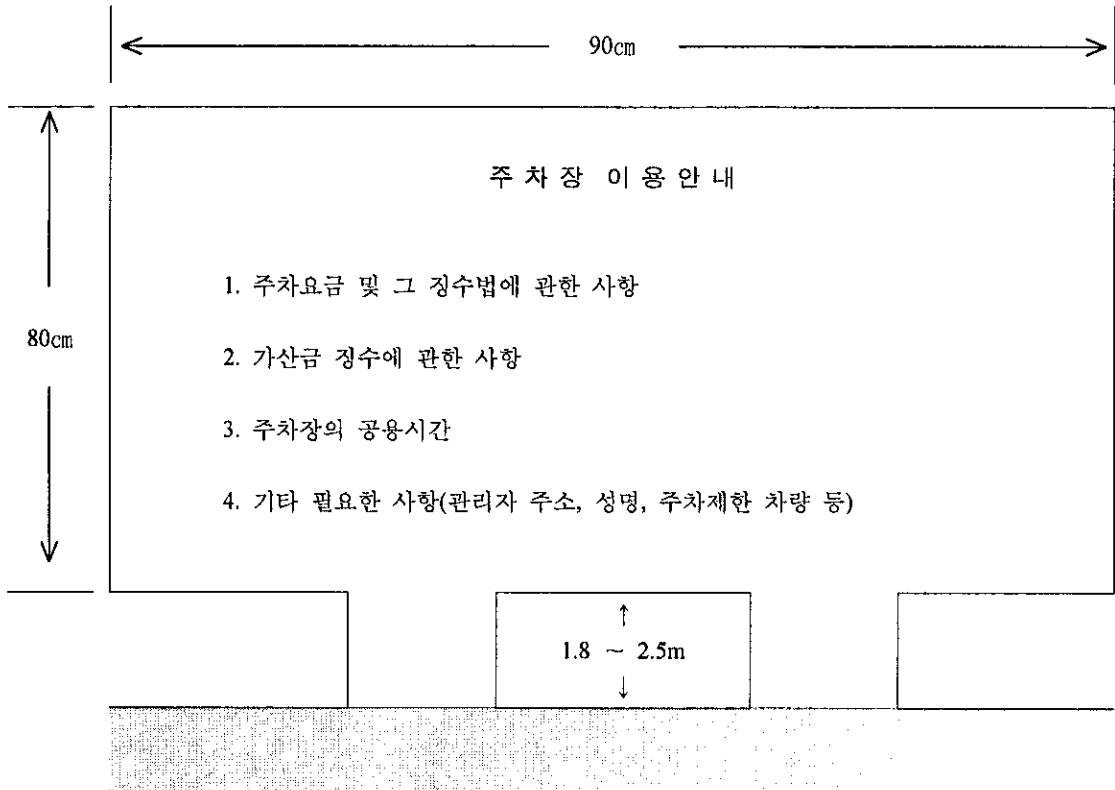
위 반 행 위	위반정도	기본과징금	가감후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위 반 시	50만원	45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 반 시	50만원	45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위반시	50만원	45만원
	개선명령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위 반 시	50만원	45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4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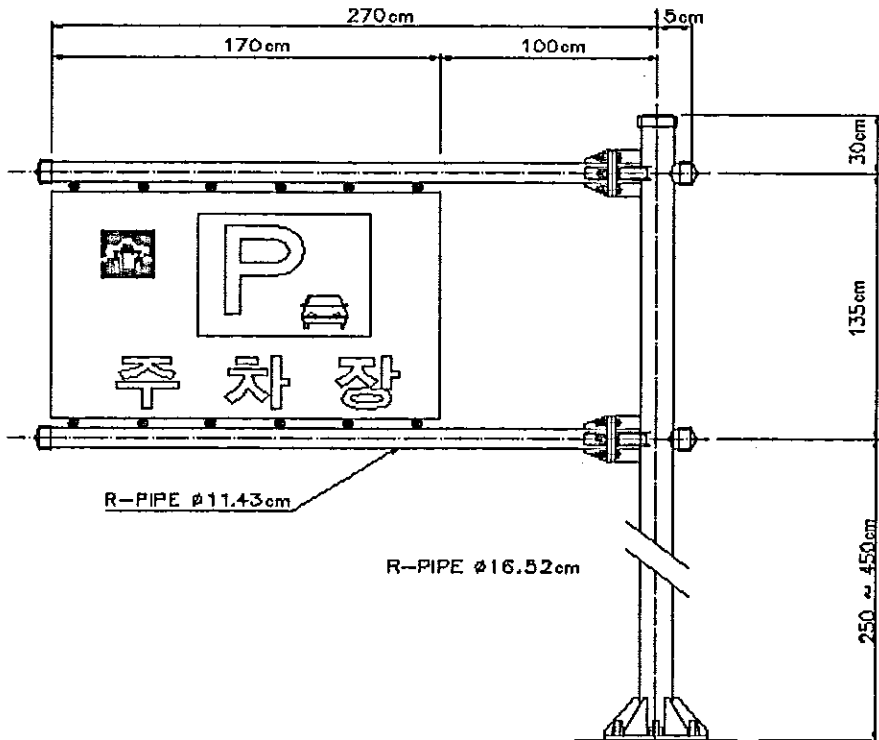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고딕)
공 영 주 차 장	알 루 미 늄 판	녹 색	흰 색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표지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 바탕 (청색)
 - └ 문자 (흰색)
- 내부표지판
 - └ 바탕 (흰색)
 - └ 표지 및 기호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75cm × 세로 62cm) CIP마크(가로 25cm × 세로 25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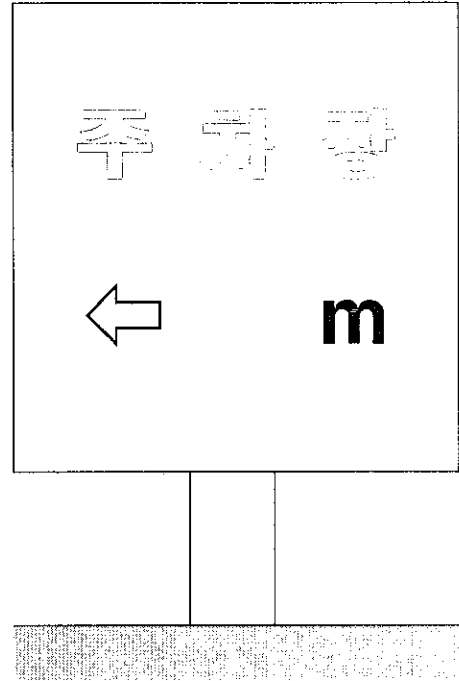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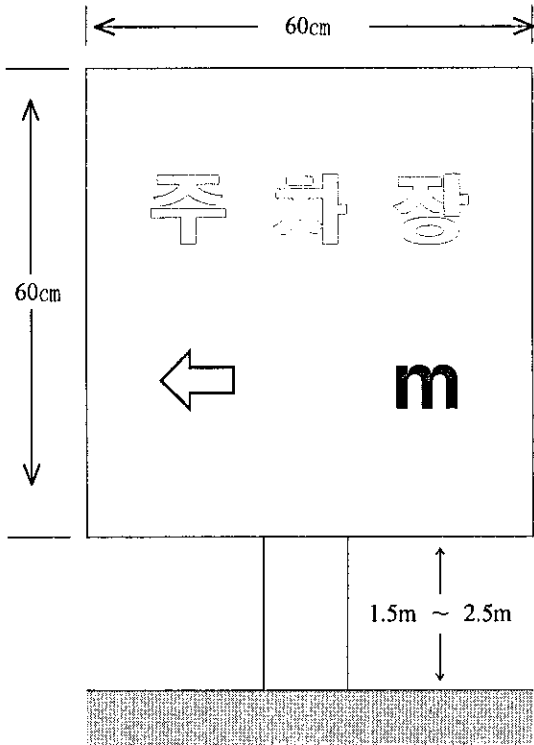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위치안내표지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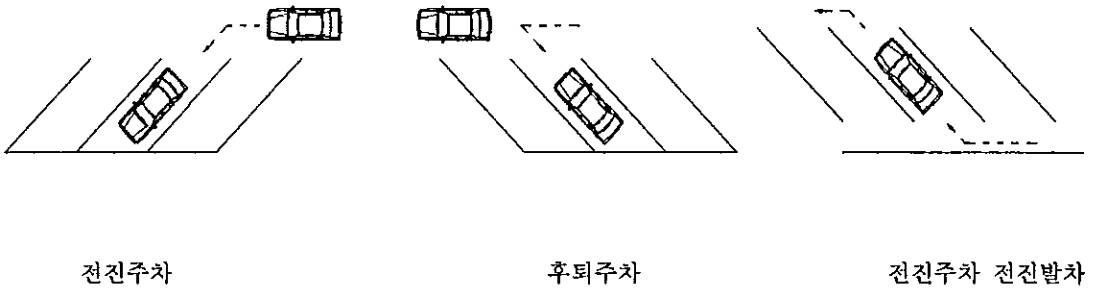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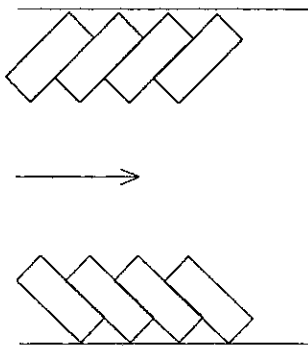
(제11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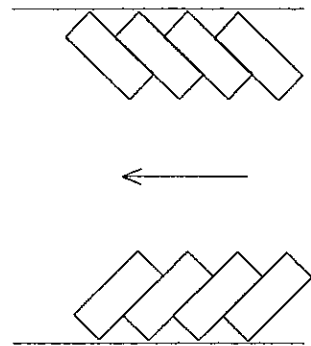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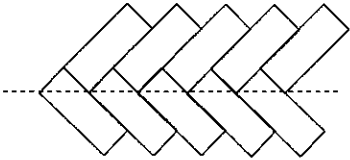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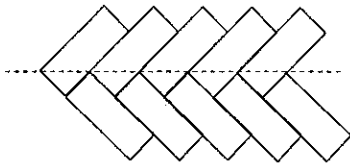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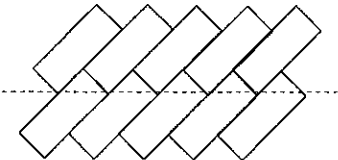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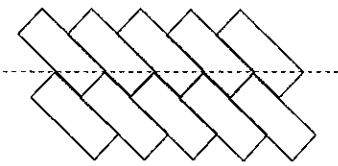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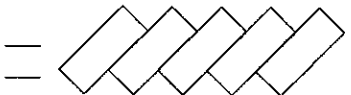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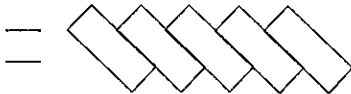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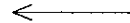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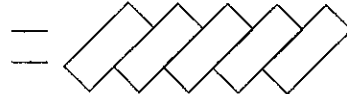
라.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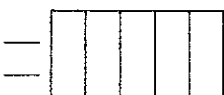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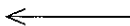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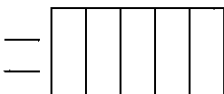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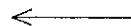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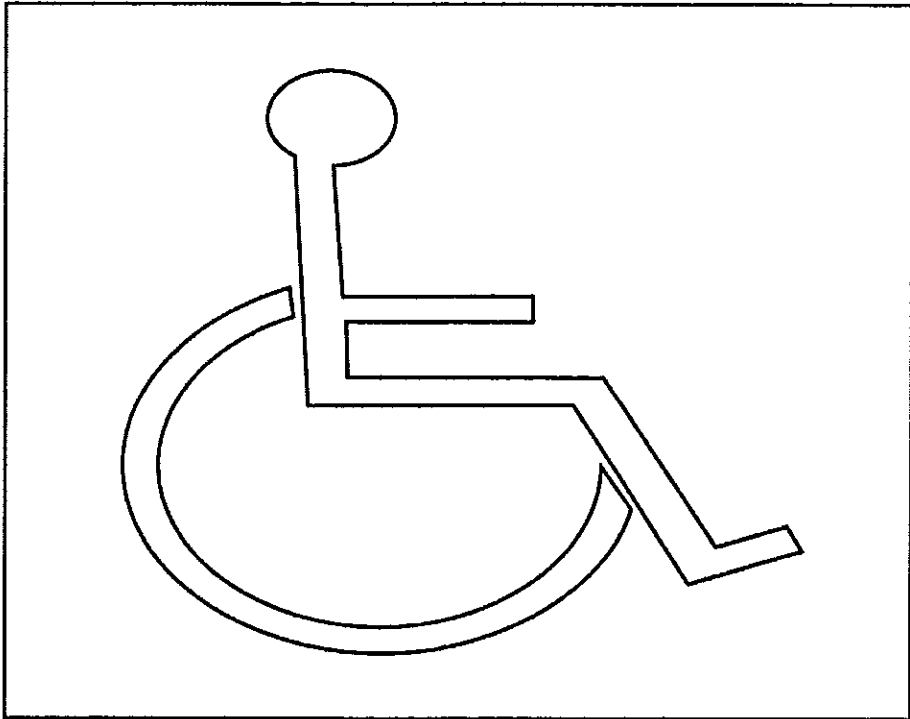
아. 90° 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

(제20조제4항 관련)



- 비 고 -

• 규 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세로 32cm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 치 위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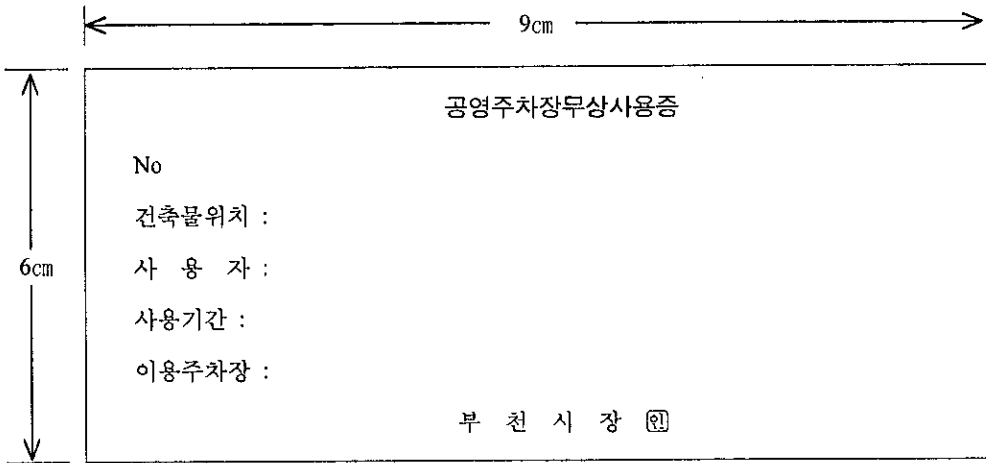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22조 관련)

(앞면)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